

신경주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I 인지세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: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(관련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, 제1항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·방법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stamp.or.kr) 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■ 가산세 개정사항(2021. 1. 1부터 적용)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- ※전자수입인지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여야 하며, 등기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공급계약체결시 전자수입인지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※전자수입인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 이전에 발행한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.

I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안내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사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④ 구매 - 납부정보 입력

- ① 용도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: 1. 부동산등 소유권 이전
- ③ 금액: 150,000원
- ④ 건수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



⑤ 출력

- 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

